

행정자치부

훈계요구

제 목 승진 예상 인원 산정 업무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훈계 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실 지방○○○ ○○○

② 부산광역시 ○○○○○실 지방○○○○○ ○○○

③ 부산광역시 ○○○○○과(전 ○○○○○실)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10. 1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은 2015. 10. 1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는 2014. 2. 3.부터 2017. 2. 까지 부산광역시 본청 인사 업무 관련 총괄책임자, 감독책임자,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

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나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 파견된 사람의 복귀,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회복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7호)에 따

르면 5급으로의 승진 예정 인원 산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승진예정인원 = 결원 + 퇴직인원 - 신규임용예정인원

- 결원 : 승진후보자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결원에서 제외
- 퇴직인원 : 해당 기간 중 정년퇴직예정인원(공로연수 확정자 포함), 명예퇴직 예정인원 및 기타 최근 3년 평균 면직인원(의원면직, 직권면직, 파면·해임 및 기타 당연퇴직 등 포함)
 - 퇴직인원으로 포함한 공로연수자는 퇴직할 때 재산정하지 않음
- 신규임용예정인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예정인원
 - 소�数점 이하의 인원은 1인으로 간주
 - 5급으로의 승진의결 횟수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결원만을 산정함

더불어, 같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별표 4] <개정 2015. 11. 18.>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명당 7배수
2명	결원 1명당 5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4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부산광역시에서는 2017. 1. 12. 인사위원회 운영 시 승진 의결 대상자 중

기술직렬(○○분야)의 승진 심사 대상 인원을 11명으로 산정하였으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지방○○○○○○, 2016. 12. 10, 뇌물수수-형사사건기소), ○○○(지방○○○○○○, 2016. 12. 10, 뇌물수수-형사사건기소)에 대한 결원은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직위해제자를 제외한 5급으로의 승진 예정 인원은 9명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부산광역시에서는 결원이나 퇴직요인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지방행정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적기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직제나 직위 신설에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예상하여 행정공백을 막고 새로운 행정수요(주택 정비사업, 국가시책인 행복주택,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직위해제된 결원까지 무리하게 포함하여 11명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그 결과 2017. 1. 12. 개최된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잘못 산정된 5급으로의 승진 예정 인원 11명을 기초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를 승진후보자 명부상 37번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 등을 승진 의결하였으나,

5급으로의 승진 임용하려는 결원 수는 11명이 아닌 9명임에 따라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대상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32번까지만 해당됨에 따라 결국 ○○○○국 ○○○○과 33번 ○○○, ○○○○국 ○○○○과 36번 ○○○은 승진하려는 임용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잘못된 승진 예정 인원 산정으로 2017. 1. 12. 5급으로의 승진 의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5급으로의 승진 예정 인 원 산정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